

生命保險標準約款의 醫學的 檢討 — 특히 廢疾障害疾病을 中心으로 —

尹 秉 鶴

(興國生命保險(株) 醫長)

I. 緒 論

우리나라 生命保險業界에서 災害保障商品을 開發販賣한 것은 1974年頃이었고 그 後 產業場에서의 事故, 交通事故等의 急增, 壽命延長에 따른 成人病등 社會的生活樣式의 變化에 따라 必然的으로 1978年以後에 災害, 傷害特約, 交通災害特約, 成人病特約, 癌保險 入院手術特約등 保障性商品이 活潑하게 販賣되었다.

그間 政府側에서도 勤勞者產業災害補償保險, 自動車事故補償保險 및 各種共濟組合(遞信, 農協, 漁協等)에서의 保障性商品이 開發販賣되고 있다. 그러나 約款의 解釋의 見解差에서 오는 紛爭때문에 民願件數가 날로 增加하고 있다.

이들 各種補償內容을 調整하고 廢疾 災害 障害疾病關係約款의 醫學的解석을 統一함으로써 混亂을 막고 契約者, 被保險者에 對한 서비스 向上에 도움이 될까 해서 이글을 發表한다.

II. 癡疾條項의 起源

本來 生命保險에서는 世帶主가 死亡함으로써 오는 一家의 經濟的損失을 保障하는 것에 그

目的을 두고 있다. 그러나 所得喪失의 原因이 반드시 死亡에만 局限되는 것이 아니고 災害 또는 疾病에 依해서도 高度의 身體障害를 永久히 남길 수도 있다.

이러한 高度의 身體障害狀態를 被保險者の 廢疾狀態(註：保險用語에서 “廢疾”을 高度身體障害라고 統一하였음)라고 말하며 이 廢疾狀態가 된 被保險者에게 어떠한 特典을 附與하자는 所謂 廉價條項取扱을 考慮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傷害에 依한 兩手, 兩足, 片手, 片足의 喪失 및 兩眼失明에 對해서만 次後保險料納入免除의 惠澤을 주었다.

그 後 完全廢疾에 對해서는 保險金相當額에 該當하는 廉疾給與金을 支給하고 部分廢疾에 對해서는 次後의 保險料納入을 免除하는 條項을 附加하였다.

III. 癡疾 條項의 擴大

當初廢疾條項을 新設했을 때는 그 適用對象을 傷害에 極限시켰고 그 範圍도 四肢中 二肢의 喪失(缺損) 및 兩眼失明으로 限定하였으나 時代의 흐름에 따라 그 條件이 緩和되어 傷害以外에 疾病에 依한 廉疾도 認定하게 되어 咀嚼 및 言

語機能의 障害(喪失)도 廢疾條項에 追加되었다. 또 脊椎壓迫骨折로 因한 脊髓橫斷障害로서 兩下肢의 完全痲痺 및 直腸膀胱障害등을 招來 하는 症狀은 約款上에 明示된 兩下肢喪失보다도 더욱 重症이라 볼 수 있고 단지 下肢가 殘存해 있다는 理由만으로 廢疾條項에서 除外된다는 것은 保險의 公平性에 問題가 있다고 解釋되어 脊髓損傷에 依한 下肢의 用廢도 廢疾에 追加하였다.

IV. 檢討의 基本方針

災害·傷害特約에서 定한 身體障害等級中 第 1 級(表 1, 2)은 그대로 廢疾條項으로 認定한다. 이 災害·傷害特約은 業界共通商品이기 때문에 어떤 一社의 獨自의인 判斷에 依해서 約款解釋의 잘못이 있어 縮小 또는 擴大解釋하면 業界內에 混亂이 오고 被保險者에게 큰 不平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約款檢討의 基本方針을 다음과 같이 定하였다.

- ① 業界共通約款의 廢疾條項 災害 傷害特約의 醫學的解釋에 對한 統一見解를 成文化한다.
- ② 疾病 成人病特約도 위에 準한다.

③ 判斷이 困難한 境界線上의 것은 被保險者에게 有利하게 解釋한다.

④ 災害 傷害에 對한 解釋은 可能限 產災法의 解釋에 準한다.

⑤ 繼續的으로 審議檢討가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것은 意見書를 添附해서 約款의 改訂을 上申한다.

產災法은 產業災害에 依해서 생긴 身體障害에 對해서 우선 勞動力의 回復을 畏하고 그 可能性이 없는 重大한 後遺症에 對해서는 年金 또는 一時金을 支給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어 任意加入形式의 民營生命保險의 災害·傷害特約과는 그 目的이 다르다. 特히 廢疾을 死亡에 準하는 生理機能의 廢絕이라고 보는 生命保險과는 그 目的이 根本的으로 다르며 따라서 生命保險給與內容이 產災法과 같을 必要性은 없다.

그러나 “官尊民卑”的 風習에 익숙되어 있고 또 現實的인 消費者運動의 影響도 있어 明確하게 生命保險쪽이 有利한 部分은 덮어 두고 產災法과 다른 點은 잘 納得하지 않는 習性이 있어 生命保險의 社會性 公共性을 考慮해서 契約者 被保險者の 不平 不滿을 解消하기 위해서 約款解釋을 產災法에 準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표 1〉

장해등급분류표

등급	신체장애
제 1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 2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10손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등급	신체장애
	3. 한팔 또는 한다리중에서 제3급 2부터 7까지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중 또는 제 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4. 두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제 3급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4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9.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제 5급	1.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4.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5.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9. 한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10.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6급	1.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단축되었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못하게 되었을 때 5.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첫째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또는 3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8.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표 2〉

장해등급분류 해설

1.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일상생활 동작의 제한”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간호는 필요하지 않으나, 평생도록 일상생활 동작에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 표에 따라 한 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시력의 뚜렷한 장해”

시력이 0.06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 표에 따라 한 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 ㅂ, ㅍ), 치설음(ㄴ, ㄷ, ㄹ), 구개음(ㅈ, ㅊ), 후두음(ㅇ, ㅎ)중 3종류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증후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등)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데시벨(청력검사단위)로 했을 때 $1/6(a+2b+2c+d)$ 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 (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의 1/2이상이 결손된 경우로서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후각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팔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 관절(팔은 어깨관절, 팔목,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11.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의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생리적운동영역의 1/2이하고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2.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애”

목뼈가 완전강직된 경우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3.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을 지절간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원위지절간관절(첫째 손가락은 말절골의 1/2)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관절(첫째 손가락은 지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4.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첫째 발가락은 말절골의 1/2이상 그외 발가락을 원위지절간관절 이성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첫째 발가락은 지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5.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을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 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표중 제1급의 5, 6, 7, 8, 9, 제2급의 1,

2, 3, 제3급의 8또는 제4급의 12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V. 癡 疾

[表 1]에 提示한 廢疾條項(身體障害等級分類表 第1級)에 對해서 檢討한 見解를 各項別로 記載한다.

1. 두 눈의 視力を 完全永久히 잃었을 때

① 失明基準 및 測定方法에 關한 說明은 現行約款身體障害等級解說[表 2]대로 한다. 또 따로 特別記載가 없는 것도 같이 解釋한다.

② 視野狹窄 또는 眼瞼下垂에 依한 視力障害는 廢疾로 認定하지 않는다. 視野狹窄은 眼球運動 등의 補助機能에 依해서 視野의 回復이 어느 程度 可能하며 眼科學的으로도 큰 障害로 보지 않는 것이 通說이다. 또 高度眼瞼下垂 때문에 開眼時에도 瞳孔領을 넘는 경우 視力障害가 온다. 그러나 手指等의 補助로서 視力を 얻을 수 있고 完全한 衰失이라고 할 수 없다.

③ 角膜混濁은 矯正視力 0.02以下를 廢疾로 認定한다. 眼底網膜에 異常이 없는 角膜混濁은 角膜移植에 依해서 視力を 回復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永久的”이란 必要條件을 充足할 수는 없다. 또 手術을 했다고 해서 視力이 回復된다는 保障도 없기 때문에 “社會盲”으로서 그 適用을 認定한다.

視力障害에 對해서는 既往症 및 先天性 遺傳性疾患에 依한 逆選擇混入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角膜混濁에 對해서는 自傷(害) 行爲者도 있어 評定에 어려움이 많다.

(註) 社會盲이란 光覺조차도 없는 眼科學的失明狀態는 아니지만 “눈”을 쓰는 作業을 할 수 없는 程度의 視力減退를 뜻한다.勿論 視力表의 0.02以下에 該當된다.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完全永久히 잃었을 때

① 聲帶全摘出은 食道發聲 또는 人工聲帶에 대해서 發聲可能한 경우도 廢疾로 認定한다.

產災法災害 第1級의 이項目은 그原因을 労動災害에 두고 있다. 그러나 生命保險에서는 惡性腫瘍에 依한 喉頭摘出例가 많기 때문에 基礎疾患自體가 重要하다. 또 聲帶喪失의 代替機能의 活用은 被保險者 자신의 強한 意志와 努力 없이는 實現이 不可能하다. 現在 우리나라에도 喉摘者團體聯合會가 結成되어 있어 食道發聲教育을 實施하고 있으며 自由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約2,000명에 달하고 있다. 食道發聲은 腹部에서 吐해내는 空氣로 食道周邊의 筋肉을 振動시켜 發聲하는 方法이다. 이以外에도 人工喉頭가 附着된 補助發聲器를 입에 물고 말하거나 電子發聲器를 턱밑에 대고 發聲하는 方法이 있긴 하나 휴대하기가 불편하고 외관상 좋지 않아 사용을 꺼리는 형편이다. 最近 臨床醫學의 發達에 따라 喉頭摘出後의 就業可能例도 있지만 이項目이 廢疾條項으로 適用될 當時의 醫學水準으로는 原疾患의 性格上 死亡保險金의 前支給의 意味가 強했다. 또 言語機能의 障害에 對해서는 約款障害等級解說記載(表 2)와 같이 이以外에 構音障害와 腦言語中樞의 損傷에 依한 失語症이 있다. 傷害特約에서는 그原因을 不意의 事故에 限定시키고는 있지만 主契約인 廢疾條項에서는 疾病에 依한 것도 紿與對象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腦卒中後遺症 또는 精神分裂症과 같은 精神障害도 包含된다. 그러나 이를 疾患에 起因하는 失語症이 “完全永久히”라는 條件에 該當하는가 하는 判定이 매우 困難하다.

② 咀嚼에 關한 約款解說에서 定한 流動食이란 液體 또는 이에 準하는 것을 말하며 죽(粥)은 包含하지 않는다. 죽은 쌀을 끓게 찐 것으로서 쌀과 물의 配合比率에 따라서 그 程度는 여러

가지가 있다. 따라서 씹지 않고 삼킬 수 있는 程度의 “미음”을 그 限界로 하고 있다.

3. 中樞神經系 또는 뚜렷한 障害를 남겨서 평생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胸腹部臟器에 뚜렷한 障害를 남겨서 평생간호를 받아야 할 때

① 平生이란 廢疾狀態가 終身 即 死亡에 이르기까지 繼續되는 것을 意味한다.

回復의 可能性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對象에서 除外한다.

② “平生 他人의 看護를 받는다”는 것은 恒常他人의 看護 없이는 生命維持에 必要한 日常生活動作(食事의 摄取, 俳便, 排尿, 衣服의 着脱등)을 할 수 없는 狀態로서 醫師가 治療를 하지 않으면 疾病이 惡化하기 때문에 生命의 維持가 不可能하다는 程度는 包含되지 않는다.

約款條文을 抽象的으로 解釋하는 것은 簡單하지만 症狀의 具體的認定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항상 他人의 看護 없이는 生命의 維持가 不可能하다는 것은 所謂 “植物人間的狀態”라고 그適用概念을 限定시키고 있다. 具體的으로는 이 植物人間의 條件으로

- a. 自己 스스로의 힘으로는 移動할 수 없다.
- b. 自力으로는 食事할 수 없다.
- c. 大小便是 失禁狀態에 있다.
- d. 눈으로는 어떤 物件을 추적하고 있으나 그 物件을 認知할 수 없다.
- e. 意思疏通되지 않는다.
- f. 목소리는 내지만 뜻있는 言語로서는 認定할 수 없다.

등의 全條件를 갖출 必要가 있다라고 見解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現存는 食物의 摄取, 俳便 및 排尿 其他의 日常動作의 程度를 다음과 같이 計量化해서 判定하기 때문에 그 基準은 많이 緩和되었다.

i) 食物의 摄取：여러가지 形態의 食物을 自

力으로 攝取할 수 있는가의 程度(이때 使用할 수 있는 器具, 食器, 其他補助具의 模樣 무게 등)을 判定한다.

ii) 俳便：排尿：大小便의 排泄은 勿論 그 뒷 처리를 自力으로 할 수 있는가? 特殊補助器具의 必要性은 없는가 등 그 能力의 程度를 判定한다.

iii) 上記以外의 日常生活動作：침대 위에서의 移動, 起坐, 坐位의 保持 침대 주변에서의 步行 衣服의 着脱 入浴등의 動作이 自力으로 可能한 가의 程度를 判定한다.

iv) 精神狀態：危險의 認識 善惡의 區別 등 判斷力의 障害에 따라 監視·看護가 必要한가의 與否를 判定한다.

③ 뚜렷한 精神障害라는 것은 生命推持에 必要한 日常生活處理動作時 항상 他人의 看護를 要하는 程度로 高度의 痴呆(痴呆)와 情意의 荒廢와 같은 精神症狀으로 恒時 監視가 必要한 경우를 意味하며 精神障害가 있기 때문에 監視를 要한다는 理由만으로는 廢疾로 認定하지 않는다. 即 항상 監視看護 또는 獨室隔難가 必要한 精神障害를 廉疾이라고 認定하는데는 큰 問題가 있다.

精神障害는 先天性 遺傳性疾患을 原因으로 하는 것이 많고 만일 이것을 認定한다면 逆選擇을 助長하는 結果가 되기 때문이다.

또 廉疾에 限해서 精神障害를 寬大하게 取扱하면 他疾患과의 公評性이 缺如되고 生命保險本質論까지 흔들리게 된다.

④ 人工腎臟(血液透析)

慢性腎障害로서 人工血液透析을 하는 것도 廉疾로 認定하지 않는다(단, 평생간호를 要하는 者는 別途查定을 한다). 通院治療의 경우 廉疾適用에서 除外된다는 것은 當然하지만 他疾患과의 公評性을 위해서도 “要入院治療” 自體를 廉疾로 認定할 수는 없다.

血液透析을 하지 않으면 尿毒症으로 死亡하게 되지만 血液透析을 하면 日常生活은 勿論 普通의

職業에 從事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即 血液透析을 最終의 治療法으로 보지 않고 腎臟移植도 考慮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血液透析 그 自體를 廉疾로 認定하지 않는다는 것은 一般的의 論理이다.

우리나라에서의 血液透析의 歷史는 1952年 6. 25事變中 美軍 제11後送病에서 Kolff-Brighton 腎臟器를 設置 使用한 報告가 있고 醫療保險法이 改定된 1976年以後 活潑하게 實施하고 있으며 總十字社의 非公式集計(1988. 1月)에 依하면 76個病院에서 2,208名이 加療中에 있다.

⑤ 人工心臟Pace-maker

人工心臟Pace-maker란 心臟拍動의 Rhysm를 維持시키는 機械이다. 이것을 裝着하면 日常生活은 勿論 就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機械裝着必要性만으로는 廉疾로 認定하지 않는다.(但, 平生看護를 要하는 者는 別途查定을 한다.)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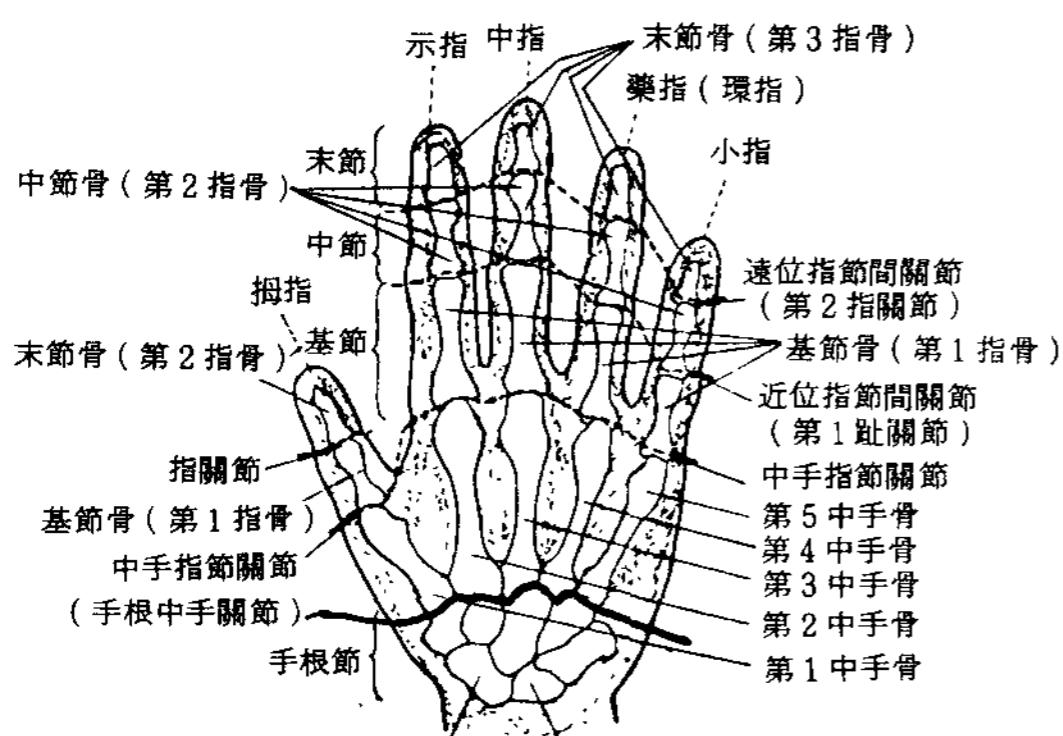
① “손목”이란 “手根中手關節”이상으로 한다.

② “발목”이란 리스프랑(Lisfranc)氏關節(足根中足關節이라고도 함) 이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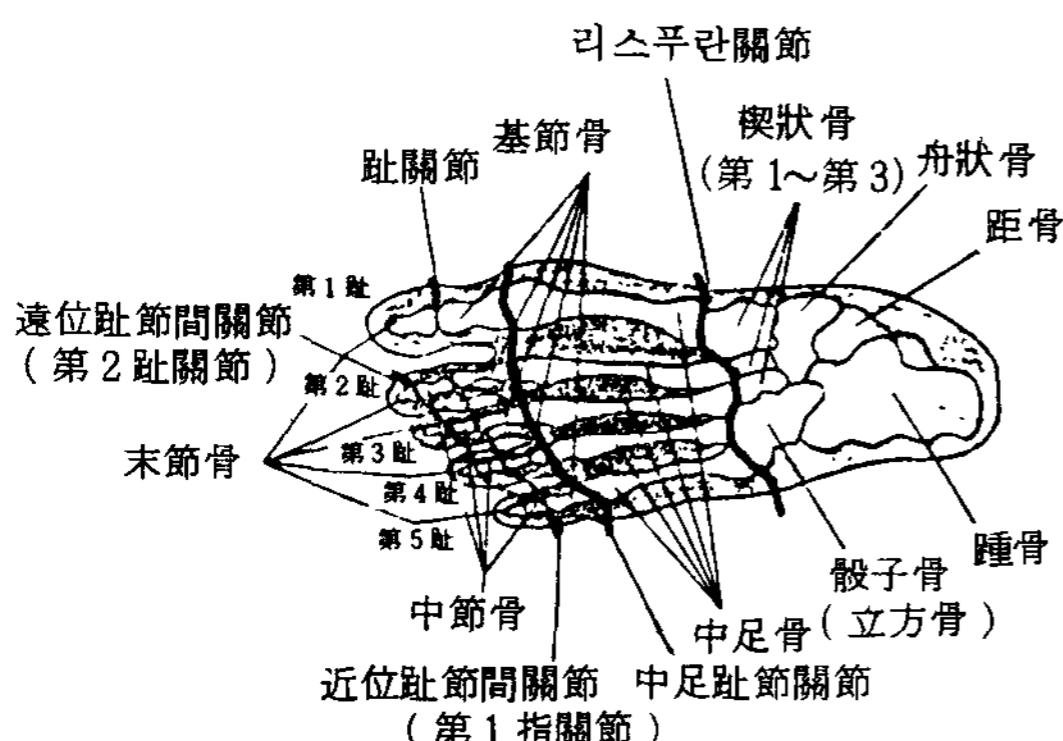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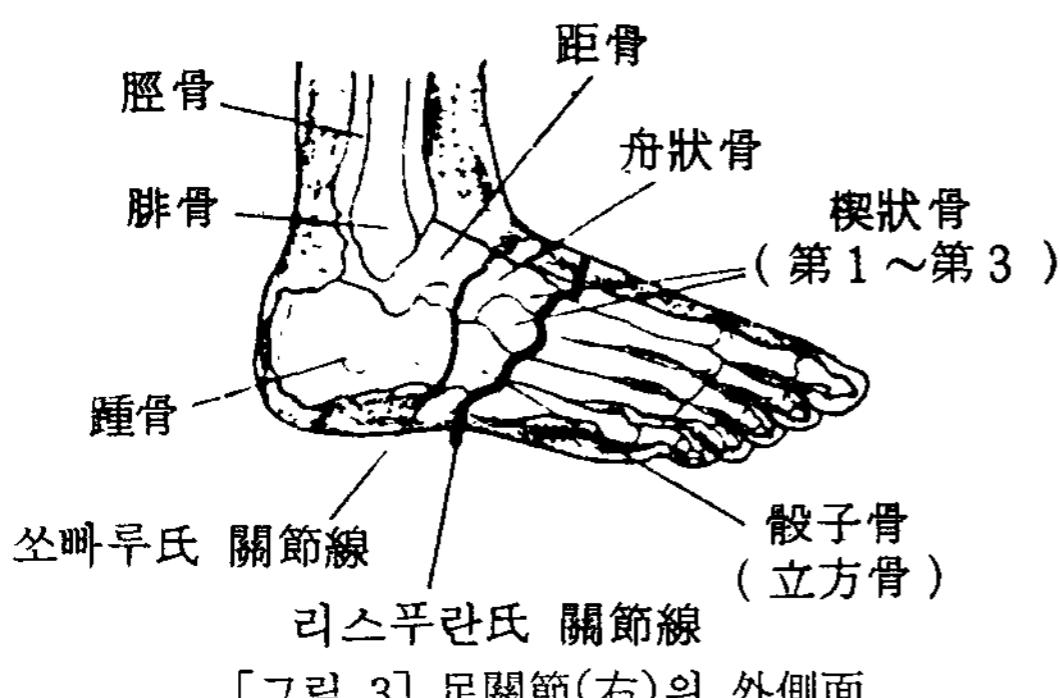
(註) “손목”이란 解剖學上의 正式名稱이 아니고 前腕의 捺骨과 手根骨사이의 關節을 뜻하는 通稱의 소위 “손목”을 말하여 被保險者側에 有利하게 遠位의 “手根中手關節”로 定한 것이며 “발목”도 近位의 “肖파르(Chopart)” 氏關節(一名 構足根關節)이 아니고 遠位의 “리스프랑” 氏關節로 統一하였다.[圖 1, 2, 3].



[그림 1] 手骨 橫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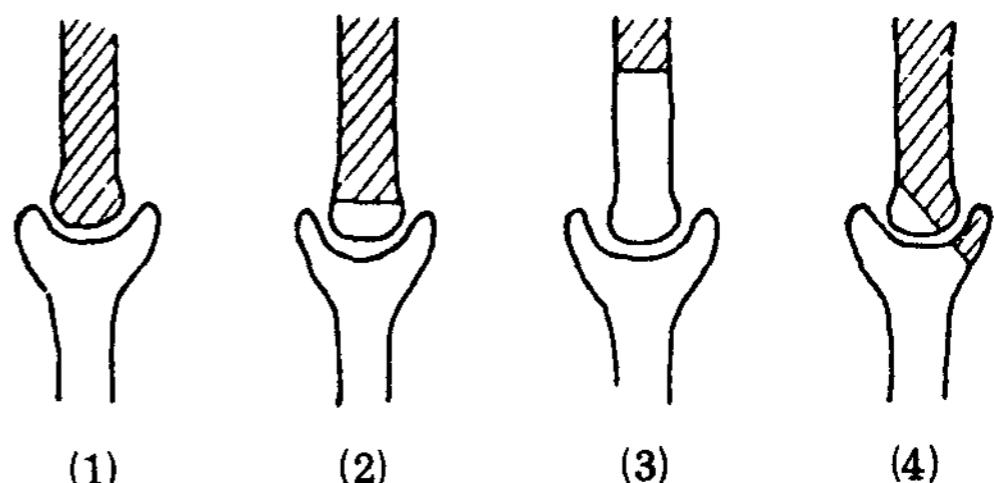
[그림 2] 足骨 橫型圖



[그림 3] 足關節(右)의 外側面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앓고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① 한팔 또는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할 수 없다는 表現은 逆選擇에 依한 腦卒中後遺症의



(1)번을 關節의 망실이라한다.

[그림 4] 關節의 亡失

混入을 誘發할 可能性이 많다.

따라서 1肢의 喪失과 1肢의 用廢로 混合條文을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② 廢疾條項(身體障害等級 1級) 第5, 6, 7, 8, 9項은 그 内容 속에 關節의 亡失이 包含되어 있다. 即 關節의 亡失이란 [그림 4]의 ①을 말 하며 ②③④는 亡失로 認定하지 않는다. 亡失部는 斜線으로 그었으며 ②④는 災害受傷時에는 볼 수 있어도 現實的인 手術像에서는 볼 수 없는 形態이다.

VI. 障 害

災害傷害特約은 被保險者가 約款<別表 1>에서 定하는 不意의 事故 또는 傳染病豫方法 第 2 條, 第 1 項, 第 1 種에 規定한 疾病에 依해서 死亡했거나 廢疾이 되었을 경우 障害保險金을 支給하거나 또는 不意의 事故로서 身體에 障害를 남겼을 경우 該當給與金을 支給하는 것을 主된 内容으로 하고 있다<別表 1>.

障害保險金 支給의 경우 그 死亡이 約款<別表 1>에서 定한 不意의 事故로 因한 傷害를 直接原因으로 하고 主契約의 保險金과 同一한 基準에 依해 處理되기 때문에 比較的 紛爭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不意의 事故에 依한 障害를 直接原因으로 하고 그 事故日로부터 起算해서 90日以内이고 特約有效期間中에 <표1>에서 定하는

〈별표 1〉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경제기획원 고시 제30호, 1979. 1. 1. 시행)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 철도사고	E 800-E 807
2. 자동차 교통사고	E 810-E 819
3. 자동차 비교통사고	E 820-E 825
4. 기타도로교통기관사고	E 826-E 829
5. 수상교통기관사고	E 830-E 838
6. 항공기 및 우주교통기관사고	E 840-E 845
7.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아니한 차량사고(케이블카, 곤돌라등)	E 846-E 848
8.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① 외용약 또는 약물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등 ② 질병의 진단치료의 목적	E 850-E 858
9.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① 세제, 유지 및 구리스용제 기타의 화학물질 접촉에 의한 피부염 『살모성(Salmonella성)식중독 ③ 세균성(포도구균성 Botulinus성) 기타 원인 불명의 세균성 식중독 ④ 알레르기성, 식이성(음식물에 의함) 또는 중독성위장염이거나 대장염	E 860-E 869
10. 불의의 추락	E 880-E 888
11.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E 890-E 899
12.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① 과도의 고온 ② 고기압, 저기압 및 기압의 변화 ③ 여행 및 운동 ④ 짚주립, 갈증, 불량환경노출 및 방치증의 짚주립, 갈증	E 900-E 909
13. 기타 불의의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① 과로 및 격렬한 운동	(E 900) (E 902) (E 903) (E 904) E 916-E 928
14. 침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E 927) E 910-E 915

분류항목	분류번호
①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삼침장해 또는 정신신경장해상태가 있는 사람의 음식물 흡입 또는 삼침에 의한 막힘 및 질식 ② 기타 물체의 흡입 또는 삼침에 의한 막힘 및 질식 15.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① 질병의 진단목적 ② 질병의 치료목적 16.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 17. 법적개입(다만 “처형은 제외한다”) 18. 전쟁행위에 의한 상해 19.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 20.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의약품 및 생물제제에 의한 사고	(E 912) E 870-E 876 E 960-E 969 E 970-E 978 E 990-E 999

2級以下의 身體障害에 該當되는 경우 身體障害程度(等級)判定에서 醫學的解釋을 싸고 意見對立이 있을 可能性이 있기에 等級別 項目別로 見解를 說明하고자 한다.

1. 身體障害 第 2 級

① 4項 : 두 귀의 聽力은 完全永久히 잃었을 때

聽力의 測定은 工業規格에 準한 Audio-meter (聽力測定計)로 하고 專門醫의 聽力檢查成績에 依해서 判定한다(矯正聽力이라는 表現은 使用하지 않는다).

2. 身體障害 第 3 級

① 1項 : 한 눈의 視力を 永久히 잃었을 때

眼鏡 또는 Contact-Lens에 依해 矯正이 可能한 경우라도 兩眼不同視(不等像症)가 있으면 裸眼視力으로 測定한다. Contact-Lens裝着時 痛通 또는 刺戟症狀이 甚하면 Lens를 使用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身體障害 第 4 級

① 10項 : 한 손의 5손가락을 完全永久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② 11項 :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包含하여 3손가락 이상을 完全永久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손가락의 用廢(身體의 一部에 對해서 缺損은 없으나 그 機能을 完全히 喪失한 狀態)에서 손가락의 亡失中 첫째손가락에 對해서는 軟部組織을 包含한 말절골(末折骨)의 1/2以上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約款解說에서 定한 말절골의 1/2이라는 表現은 極히 漠然하지만 末稍指節骨의 길이를 比較的 正確하게 測定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軟部組織도 包含하기 때문에 事實上은 2/3을 잃은 것으로 된다.

約款의 主目的이 손가락의 運動과 知覺機能의 低下를 救濟하는데 있기 때문에 神經이나 腱 등의 軟部組織을 包含시킨다는 見解를 擇한다.

③ 12項 : 5발가락을 完全永久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손가락의 用廢에 準한다. 첫째발가락에 대해서는 軟部組織을 包含한 末節骨의 1/2以上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境界域에 있는 것은 被保險者에게 有利하게 라는 精神에 따라 處理한다.

4. 身體障害 第 5 級

5. 身體障害 第 6 級

特別한 問題는 없다.

6. 其 他

① 人工關節：人工骨頭 또는 人工關節을 裝着한 사람은 產災法에 準해서 關節이 用廢된 者로 認定한다.

② 用廢：身體의 一部에 對해서 缺損은 없지만 그 生理的機能을 完全히 壓失한 狀態라는 것은前述한 바 있다. 그러나 用廢에 關해서는 將次回復可能性이 있는 것과 詐病 등 判定이 困難한 것이 있다.

따라서 事務處理上의 不便이 없다면 廢疾保險金支給보다는 產災法에 準해서 年金支給쪽을 指하고 症狀의 消退 또는 回復이 되면 支給停止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II. 疾 病

疾病保險은 被保險者가 契約責任開始後에 發病한 疾病에 對해서 그 治療를 目的으로 入院했을 경우 入院給與金을, 手術을 받았을 경우에는 手術給與金을 支給하는 것을 主目的으로 한다.

① 既往症에 對한 告知期間：保險金 支給對象이 되는 死因과 入院給與의 原因疾病과는 그種類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生命保險의 경우에는 新生物(癌) 腦卒中, 心臟病, 高血壓 등에 依한 死亡이 保險金支給의 主對象이지만 疾病保險에서는 胃腸疾患 肝臟疾患등의 消化器系統과 椎間板허－니아(Hernia) 및 耳鼻科系疾患이 많다.

따라서 이것과 聯關된 逆選擇이 增加하고 있다. 이것에 對抗해서 醫學的選擇을 하지만 診查自體를 완벽한 것이라 할 수 없다. 被保險者가 정확한 告知를 하지 않는 것도 問題이지만 疾病關係保險을 販賣하고 있는 時點에서 既往症에

對한 告知期間이 5年이라는 것은 너무 짧은 感이 있다. 特히 先天性 遺傳性 慢性疾患에 依한 逆選擇의 混入이 많다는 點에서 적어도 重要疾患에 對한 告知期間을 10年으로 延長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約款의 嚴密한 解釋：最近 醫學의 發展에 따라 臟器移植이 活潑하게 추진되고 있다.

아직도 모든 臟器에 對해서 移植하는 것은 아니지만 角膜, 腎臟骨移植等은 꽤 많이 그 實行例를 發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移植에 關係되는 問題가 생긴다. 例로서 병든 子息에 對해서 그 父母가 한쪽 腎臟을 提供하는 手術이다. 即, 提供者は 自己의 肉體의 一部를 摘出해서 이것을 他人에게 提供하는 것인데 肉親間의 臟器를 提供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疾病保險은 逆選擇이 아니라는 感情論도 있지만 見解를 달리하면 肉親이기 때문에 계획된 逆選擇이라고 할 수 있다. 即, 自己의 臟器를 提供하기 위해서 入院手術을 計劃하고 疾病保險契約을 締結했다는 것은 故意이며 保險本質의 偶發性이 없고 反對로 事故率이 100%라는 點이다.

어디까지나 手術給與에 對해서는 被保險者 自身의 契約責任開始期以後에 發病한 疾病 또는 發生한 不意의 事故를 直接原因으로 하는 傷害의 治療를 目的으로 하는 手術에 限定해야 할 것이다.

③ 手術給與와 그 矛盾：生命保險業界의 疾病保險商品構成에는 主契約式과 特約附加方式의 두가지가 있다. 또 手術給與에 對해서도 그適用手術名을 開頭術, 開腹術 등 手術名包括方式을 使用하는 會社와 胃切除術, 子宮全摘除術 등 具體的인 手術名例舉方式을 採擇한 會社가 있다. 어느 쪽이든간에 廢疾 障害의 경우와 달라서 疾病保險에 關한 限 入院 手術給與는 全社統一된 約款을 適用하지 않기 때문에 그 適用範圍나 料率이 다르다.

手術名包括方法은 醫學的專門知識을 갖지 않는 契約者, 被保險者에게는 約款을 理解하기 쉽

다는 長點도 있고 該當部位를 全部包括한다는 有利한一面도 있다.

그러나 詳細히 檢討하면 意外의 矛盾을 發見 한다. 例를 들면 “腰部椎間板허－니아” 手術의 경우 그 症狀과 手術을 하는 醫師의 見解에 따라 腹側에서 執刀하는 경우와 背側에서 執刀하는 경우가 있다. 이 할 때 手術名例舉方式에서는 어느 쪽이든 脊椎觀血手術로서 約款에 該當되지만 手術名包括方式에서는 前者は 開腹手術에 該當되고 後者は 該當手術名이 없다. 따라서 後者は 給與金支給對象에서 除外된다.

子宮全摘除手術도 腹式과 膿式이 있어 같은 理論이 適用된다. 같은 部位를 같은 効果의 手術을 하면서 術式에 따라 取扱을 달리하는 것은 큰 矛盾이라고 할 수 있다.

契約者 被保險者의 不平不滿을 解消하고 手術給與金支給紛爭을 줄이는 方法은 約款의 記載와 理解는 어렵지만 醫學的으로 봐서 正確한 手術名列舉方式을 採擇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III. 不意의 事故 認定

1. 災害인가 疾病인가

災害特約加入者에게는 死因이 不意의 事故인가 또는 疾病인가를 判定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

不意의 事故에 依한 死亡 또는 瘻疾은 割增 保険金을 支給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死亡 瘻疾 또는 入院의 原因이 不意의 事故인가 内因性疾病인가의 判定은 어디까지나 事實대로 해야 한다. 被保險者의 契約當時의 體力이나 健康狀態 또는 事故의 診斷書나 證明書內容의 表面的解釋에 依해서 機械的으로 判定해서는 안된다.

災害의 判定要素로는

- ① 外因에 因한 傷害程度
- ② 診斷書 또는 證明書의 記載內容
- ③ 平素의 健康狀態 聯關性이 있는 既存의

缺陷有無 등을 參考로 한다.

災害關係約款에서는 對象이 되는 不意의 事故의 定義를 “偶發의인 外來의 事故라고 定하고 있다. 一般的으로 災害의 3大要因으로 事故의 急激性, 偶發性, 外來性이 舉論되지만 生命保險約款에는 急激性에 對해서 成文化되지 않았다.

偶發性이란 概念 속에는 當然히 急激하다는 뜻이 包含되어 있기 때문에 省略되었다고 해석하지만 法的理論上에서나 實務的立場에서 急激이라는 字句가 없기 때문에 解釋의 혼돈을 일으키고 被保險者와의 사이에 紛爭의 素地를 만들고 있다.

2. 癲癇(癲疾)

癲疾은 國際死因分類表에 明確하게 疾病으로項目이 設定되었으면서도 死亡診斷書記載事項中의 死因을 病死 또는 災害死로 記載해 그 判斷에 混線을 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癲疾發作時의 意識喪失 순간 때 옆에 있는 웅덩이 또는 물이 고인데 빠져서 窒死한다든가 벼랑에서 떨어져서 墜落하는 경우가 大發作에 依한 窒息死보다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保社部에서는 直接死因이 墜落으로 因한 頭蓋骨骨折이라 하더라도 그 原因이 癲疾인 경우에는 疾病死로 記載하라고 提示하고 있다.

따라서 癲疾 不告知에 依한 逆選擇을 排除하고 保險集團의 公評性을 維持하기 위해서도 癲疾既往症에 對한 告知義務違反을 따지는 것은 當然하다고 생각된다.

3. 破傷風, 血清肝炎

破傷風, 血清肝炎은 感染性疾患이지만 肺炎이나 結核等 其他 感染性疾患과는 달리 破傷風은 創傷에 依하고 血清肝炎은 輸血에 依해서 感染된다는 點이다. 그 原因이 明確하게 外傷에 依한 것이 認定된다면 이들 疾病은 不意의 事故로 取扱할 수 있을 것이다.

IX. 其 他(問題點)

1. 90日條項

現行災害入院特約約款에는 被保險者が 不意의 事故에 依해서 傷害治療를 目的으로 한 入院의 경우 入院日數에 따라서 入院給與金을 支給한다고 되어 있고 또 “高度障害狀態(廢疾)가 確定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事故日로부터 90日이 지난날 現在狀態의 診斷基準으로 高度의 障害狀態與否를 決定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災害入院의 경우 不意의 事故日로부터 起算

해서 90日以内에 入院이 開始되어야 된다는 條件이다. 또 被保險者が 같은 不意의 事故로 因해 2回以上 入院했을 경우 그 事故日로부터 起算해서 90日以内에 개시한 入院日數를 合算해서 入院給與金을 支給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을 흔히 90日條項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理由로서 90日을 180日로 延長할 것을 提議한다.

① <別表 2>에서와 같이 單純骨折에서 骨癒合에 所要되는 固定日數가 12週(90日)를 超過하는 項目이 많다. 固定後 物理治療過程에서 骨折部位 및 隣接關節의 機能狀態를 決定할 수 있는데 90日로는 短고 最小限 表에 例示된 24週

<별표 2> 骨癒合에 要하는 固定日數概算

(Approximate Immobilization Necessary for Union)

(Handbook of Fracture에서)

骨折部位(Fracture Site)	小兒(Children)	成人(Adults)
手指節骨 Phalanx	3週	3週
中手骨 Metacarpal	6	6
手根骨 Carpal	稱少	6
舟狀骨 Scaphoid	稱少	10 (或은 X-線上 癒合時까지)
橈骨 및 尺骨 Radius&Ulna	6-8	10-12
上膊骨 Humerus Supracondylar	6	8
Midshaft	6	8-12
Proximal, Impacted	3	3(早期運動)
Displaced	6	6-8
鎖骨 Clavicle	4	6
椎骨 Vertebra	16	16
骨盤骨 Pelvis	4	6
大腿骨 Femur, Intracapsular	16	24
Intertrochanteric	6	10-12
Shaft	8-10	18
Supracondylar	6-8	12-15
下腿骨 Tibia&Fibula, Proximal	6	8-10
Shaft	8-10	18
Malleolus	6	6
足骨 Foot 踵骨 Calcaneous	10	12-16
中足骨 Metatarsal	6	6
足趾骨 Toes	3	3

(180日)程度는 必要하다.

② 四肢複雜骨折의 경우 骨折된 骨片을 固定하기 위해서는 鋼製의 釘(못)을 使用한다.

이 못은 體內에서 異物로서 作用하기 때문에 體內에 放置할 수 없으며 早期에 除去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高齡者인 경우, 創傷의 回復이 완만하고 가령 表面의 軟部組織이 治癒되었어도 深部의 骨組織은 化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拔釘手術實施까지는 相當한 長期間이 必要하기 때문에 一段 退院하고 拔釘을 爲한 再入院이 必要하게 된다. 이 期間이 不意의 事故日로부터 起算해서 90日以内이면 問題가 없지만 이것을 超過했을 때는 約款適用外가 된다.

拔釘手術도 四肢觀血手術의 一部이며 獨立된 手術이 아니고 固定術과 聯繫된 手術이기 때문에 90日이 經過하였다고 保險給與金支給을 謝絕하는 것은 不當하다.

③ 入院給與金支給의 入院日數는 120日을 最高한도로 하고 있는데 高度障害判斷은 不意의 事故發生日로부터 90日現在를 基準으로 하라는 것은 矛盾이다.

④ 產災法에서는 “6個月以内에 症狀이 固定될 可望이 없다고 認定될 때에는 療養終了時 障害가 固定될 것으로 認定되는 症狀에 依하여 判定할 것”이라고 最少 6個月(180日)로 定하고 있다.

④ 日本에서는 1976年(昭和51年) 3月에 90日에서 180日로 延長, 約款을 改訂하였다.

2. 癡疾의 定義와 臟器組織의 亡失

定義：負傷 또는 疾病이 治癒되었으나 身體에 殘存하는 永久的인 精神的 肉體的 毀損狀態로 因하여 勞動力を 完全히 衰失한 狀態이다.

① 腎臟, 肺臟, 脾臟, 膽囊, 胃腸等의 内臟臟器를 切除(亡失)한 것을 癡疾狀態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被保險者 個個人의 狀態에 따라 判定이 달라진다. 障害等級約款 1級 4項에는 “胸·腹部臟器에 뚜렷한 障害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라고 規定하고 있다.

廢疾條項을 新設할 때의 概念은 自力으로는 아무일도 할 수 없는 植物人間的狀態를 癡疾이라고 認定하였고 現在에는 日常生活動作의 程度를 計量化해서 決定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胃腸 臟器를 切除하였다하더라도 自力으로 食事의 摄取, 排便, 其他 衣服의 着脱 등 日常生活을 할 수 있다면 癡疾이라 볼 수 없다.

3. 人工關節 또는 人工骨頭裝置者

人工關節 또는 人工骨頭裝置者는 用廢로 보기 때문에 裝着部位에 따라서 1級에서부터 IV級까지 該當될 수 있다.

4. 障害等級分類

生命保險障害等級은 I級에서 VI까지이고 產災나 自動車賠償保險에서는 I級 XIV級까지로 分類되어 있다.

자동차保險障害等級은 勞動力喪失程度로 分類<別表 3>하였고 產災保險은 賃金基準으로 分類<別表 4>하였으며 字句表現이 다를 뿐 内容는同一하다.

四肢缺損部分은 生保에서는 손목, 膝을 基準으로 하였는데 產災나 自保에서는 關節과 膝關節을 基準으로 하였기 때문에 生保 쪽이 많이 緩和되어 있다.

<別表 3>

(自保) 後遺障害 等級表

等級	後遺障害	勞動能力喪失率
1級	1. 두 눈이 失明된 것 2. 咀嚼과 言語의 機能을 衰失한 것	

等級	後遺障害	勞動能力喪失率
	3. 精神에 顯著한 障害를 남겨 언제나 他人의 看護를 必要로 하는 것 4. 胸腹部 臟器의 機能에 顯著한 障害를 남겨 언제나 他人의 看護를 必要로 하는 것 5. 半身不隨로 된 것 6. 兩上肢의 肘關節 이상이 切斷된 것 7. 兩上肢의 機能이 喪失한 것 8. 兩下肢의 膝關節 이상이 切斷된 것 9. 兩下肢의 機能이 喪失한 것	100%
2 級	1. 한 눈이 失明되고 다른 눈의 視力이 0.02이하로 된 것 2. 두 눈의 視力이 0.02이하로 된 것 3. 兩上肢의 腕關節 이상이 切斷된 것 4. 兩下肢의 足關節 이상이 切斷된 것	100%
3 級	1. 한 눈이 失明되고 다른 눈의 視力이 0.06이하로 된 것 2. 咀嚼 또는 言語의 機能을 喪失한 것 3. 精神에 顯著한 障害를 남겨 終身 勞務에 從事할 수 없는 것 4. 胸腹部 臟器의 機能에 顯著하게 障害를 남겨 終身勞務에 從事할 수 없는 것 5. 양손의 手指全部가 切斷된 것	100%
4 級	1. 두 눈의 視力이 0.06이하로 된 것 2. 咀嚼과 言語의 機能에 顯著한 障害를 남긴 것 3. 鼓膜의 全部의 缺損 등으로 인하여 兩耳의 聽力이 完全히 喪失된 것 4. 1上肢의 肘關節 이상이 切斷된 것 5. 1下肢의 機能이 喪失된 것 6. 양손의 手指全部의 機能을 喪失한 것 7. 兩足의 “리스프랑” 關節 이상이 切斷된 것	92%
5 級	1. 한 눈이 失明되고 다른 눈의 視力이 0.1이하로 된 것 2. 1上肢의 腕關節 이상이 切斷된 것 3. 1下肢의 足關節 이상이 切斷된 것 4. 1上肢의 機能이 喪失된 것 5. 1下肢의 機能이 喪失된 것 6. 兩足의 足趾 全部가 切斷된 것	79%
6 級	1. 두 눈의 視力이 0.1이하로 된 것 2. 咀嚼 또는 言語機能에 顯著한 障害를 남긴 것 3. 鼓膜의 大部分이 缺損 등으로 인하여 兩耳의 聽力이 耳殼에 接하지 아니하면 큰 소리를 解得할 수 없는 것 4. 脊椎에 顯著하게 畸形 또는 運動障害를 남긴 것 5. 1上肢 3大關節中 2關節의 機能을 喪失한 것 6. 1下肢의 3大關節中 2關節의 機能을 喪失된 것 7. 한 손의 5指 또는 拇指와 食指를 포함한 4指가 切斷된 것	67%
7 級	1. 한 눈이 失明되고 다른 눈의 視力이 0.6이하로 된 것 2. 鼓膜의 中等度의 缺損 등으로 인하여 兩耳의 聽力이 40cm이상의 거리에서 는 보통의 音聲을 解得할 수 없는 것 3. 精神에 障害를 남겨 輕易한 勞務이외의 勞務에 從事할 수 없는 것	

等級	後遺障害	勞動能力喪失率
	4. 神經系統의 機能에 顯著한 障害를 남겨 輕易한 勞務 이외의 勞務에 從事 할 수 없는 것 5. 胸腹部 臟器의 機能에 障害를 남겨 輕易한 勞務 이외의 勞務에 從事할 수 없는 것 6. 한 손의 拇指와 食指가 切斷된 것 또는 拇指 혹은 食指를 包含한 3指 이상 의 手指가 切斷된 것 7. 한 손의 5指 또는 拇指와 食指를 包含한 4指가 使用不能하게 된 것 8. 1足의 “리스프랑” 關節 이상이 切斷된 것 9. 1上肢에 假關節을 남겨 顯著한 運動障害를 남긴 것 10. 1下肢에 假關節을 남겨 顯著한 運動障害를 남긴 것 11. 兩足의 足趾의 全部가 使用不能하게 된 것 12. 女子의 外貌에 顯著하게 醜狀을 남긴 것 13. 兩側의 睾丸이 喪失된 것	56%
8級	1. 한 눈이 失明되거나 또는 한 눈의 視力이 0.02이하로 된 것 2. 脊椎에 運動障害를 남긴 것 3. 한 손의 拇指를 包含한 2指가 切斷된 것 4. 한 손의 拇指와 食指 또는 拇指 혹은 食指를 包含한 3指 이상의 手指가 使用不能하게 된 것 5. 1下肢가 5cm이상이 短縮된 것 6. 1上肢의 3大關節中 1關節이 使用不能하게 된 것 7. 1下肢의 3大關節中 1關節이 使用不能하게 된 것 8. 1上肢에 假關節을 남긴 것 9. 1下肢에 假關節을 남긴 것 10. 1足의 足趾의 全部가 切斷된 것 11. 脾臟 또는 한 쪽의 腎臟이 喪失된 것	54%
9級	1. 두 눈의 視力이 0.6이하로 된 것 2. 한 눈의 視力이 0.06이하로 된 것 3. 두 눈에 半盲症, 視野狹窄 또는 視野變狀을 남긴 것 4. 양 눈의 眼瞼에 顯著한 缺損을 남긴 것 5. 鼻를 缺損하거나 그 機能에 障害를 남긴 것 6. 咀嚼과 言語의 機能에 障害를 남긴 것 7. 鼓膜의 全部의 缺損 등으로 인하여 1耳의 聽力이 喪失된 것 8. 한 손의 拇指가 切斷된 것, 食指를 包含한 2指가 切斷된 것 또는 拇指와 食指이외의 3指가 切斷된 것 9. 한 손의 拇指를 包含한 2指가 使用不能하게 된 것 10. 1足의 第1足趾를 包含한 둘 이상의 足趾가 切斷된 것 11. 1足의 足趾의 全部가 使用不能하게 된 것 12. 生殖器에 顯著한 障害를 남긴 것 13. 精神에 障害를 남겨 從事할 수 있는 勞務가 相當한 程度로 制限되는 것 14. 神經系統의 機能에 障害를 남겨 從事할 수 있는 勞務가 相當한 程度로 制限 되는 것	35%
10級	1. 한 눈의 視力이 0.1이하로 된 것 2. 咀嚼 또는 言語言의 機能에 障害를 남긴 것	

等級	後遺障害	勞動能力喪失率
	3. 14齒 이상에 대하여 齒牙補綴을 加한 것 4. 鼓膜의 대부분의 缺損등으로 인하여 1耳의 聽力이 耳殼에 接하지 않으면 큰 소리를 解得할 수 없는 것 5. 한 손의 食指가 切斷된 것 또는 拇指와 食指 以外의 2指가 切斷된 것 6. 한 손의 拇指가 使用不能하게 된 것, 食指를 包含한 2指가 使用不能하게 된 것, 또는 拇指와 食指 이외의 3指가 使用不能하게 된 것 7. 1下肢가 3cm이상 短縮된 것 8. 1足의 第1足趾 또는 다른 4足趾가 切斷된 것 9. 1上肢의 3大關節中 1關節의 機能에 顯著한 障害를 남긴 것 10. 1下肢의 3大關節中 1關節의 機能에 顯著한 障害를 남긴 것	
11級	1. 두 눈의 眼球에 顯著한 調節機能障害 또는 運動障害를 남긴 것 2. 두 눈의 眼瞼에 顯著한 運動障害를 남긴 것 3. 한 눈의 眼瞼에 顯著한 缺損을 남긴 것 4. 鼓膜의 中等度의 缺損 등으로 인하여 1耳의 聽力이 4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音聲을 解得할 수 없는 것 5. 脊椎에 畸形을 남긴 것 6. 한 손의 長指 또는 藥指가 切斷된 것 7. 한 손의 食指가 使用不能하게 된 것, 또는 拇指이외의 2指가 使用不能하게 된 것 8. 1足의 第1足趾를 包含한 둘이상의 足趾가 使用不能하게 된 것 9. 胸腹部 臟器에 障害를 남긴 것	55%
12級	1. 한 눈의 眼球에 顯著한 調節機能障害 또는 運動障害를 남긴 것 2. 한 눈의 眼瞼에 顯著한 運動 장해를 남긴 것 3. 7齒 이상의 齒牙補綴을 加한 것 4. 1耳의 耳殼의 大부분이 缺損된 것 5. 鎖骨, 胸骨, 肋骨, 肩胛骨 또는 骨盤骨에 顯著한 畸形을 남긴 것 6. 1上肢의 3大關節中의 1關節의 機能에 障害를 남긴 것 7. 1下肢의 3大關節中의 1關節의 機能에 障害를 남긴 것 8. 長管骨에 畸形을 남긴 것 9. 한 손의 長指 또는 藥指가 使用不能하게 된 것 10. 1足의 第2足趾가 切斷된 것, 第2足趾를 包含한 2足趾가 切斷된 것 또는 第3足趾이하의 3足趾가 切斷된 것 11. 1足의 第1足趾 또는 다른 4足趾가 使用不能하게 된 것 12. 局部에 頑固한 神經症狀을 남긴 것 13. 男子의 外貌에 顯著한 魁狀을 남긴 것 14. 女子의 外貌에 魁狀을 남긴 것	14%
13級	1. 한 눈의 視力이 0.6이하로 된 것 2. 한 눈에 半盲症, 視野狹窄 또는 視野變狀을 남긴 것 3. 두 눈의 眼瞼의 일부에 缺損을 남겼거나 또는 속눈썹이 빠진 흔을 남긴 것 4. 한 손의 小指가 切斷된 것 5. 한 손의 拇指의 指骨의 一部가 切斷된 것 6. 한 손의 食指의 指骨의 一部가 切斷된 것 7. 한 손의 食指의 末關節을 屈伸시킬 수 없게 된 것	9%

等級	後遺障害	勞動能力喪失率
	8. 1下肢의 1cm 이상 短縮된 것 9. 1足의 第3足趾이하의 하나 또는 둘의 足趾가 切斷된 것 10. 1足의 第2足趾가 使用不能하게 된 것, 第2足趾를 包含한 2足趾가 使用不能하게 된 것 또는 第3足趾 이하의 3足趾가 使用不能하게 된 것	
14級	1. 한 눈의 眼瞼의 일부에 缺損이 남았거나 또는 속 눈썹이 빠진 흠을 남긴 것 2. 3齒 이상에 대하여 齒牙補綴을 加한 것 3. 上肢의 露出面에 손바닥만한 크기의 醜한 흔적을 남긴 것 4. 下肢의 露出面에 손바닥만한 크기의 추한 흔적을 남긴 것 5. 한 손의 小指가 使用不能하게 된 것 6. 한 손의 拇指와 食指 이외의 手指의 指骨의 일부가 切斷된 것 7. 한 손의 拇指에 食指 이외의 手指의 末關節을 屈身시킬 수 없게 된 것 8. 1足의 第3足趾 이하의 하나 또는 둘의 足趾가 使用不能하게 된 것 9. 局部에 神經症狀을 남긴 것 10. 男子의 外貌에 醜狀을 남긴 것	5%

〈別表 4〉

(產災) 身體障害等級表

	第1級 (1,340日分)
1	두 눈이 失明된 者
2	咀嚼과 言語의 機能이 全廢된 者
3	精神에 顯著한 障害가 남아 恒常 介護를 要하는 者
4	胸腹部臟器에 顯著한 障害가 남아 恒常 介護를 要하는 者
5	半身不隨가 된 者
6	두 팔을 肘關節 以上에서 喪失한 者
7	두 팔의 機能이 全廢된 者
8	두 다리를 膝關節 以上에서 喪失한 者
9	두 다리의 機能이 全廢된 者
	第2級 (1,190日分)
1	한 눈이 失明되고 다른 눈의 視力이 0.02以下로 된 者
2	두 눈의 視力이 0.02以下로 된 者
3	두 팔을 腕關節 以上에서 喪失한 者
4	두 다리를 足關節 以上에서 喪失한 者
	第3級 (1,050日分)
1	한 눈이 失明되고 다른 눈의 視力이 0.06以上로 된 者
2	咀嚼 또는 言語의 機能이 全廢된 者
3	精神에 顯著한 障害가 남아 終身토록 勞務에 從事하지 못하는 者
4	胸腹部臟器의 機能에 顯著한 障害가 남아 終身토록 勞務에 從事하지 못하는 者
5	두 손의 手指를 모두 喪失한 者
	第4級 (920日分)
1	두 눈의 視力이 0.06以下로 된 者
2	咀嚼과 言語言의 機能에 顯著한 障害가 남은 者
3	鼓膜의 全部의 缺損이나 그 外의 原因으로 因하여 두 귀의 聽力を 全혀 喪失한 者

4	한 팔을 肘關節 以上에서 喪失한 者
5	한 다리를 膝關節 以上에서 喪失한 者
6	두 손의 手指가 모두 廢用된 者
7	두 팔을 “리스푸랑”關節 以上에서 喪失한 者
	第 5 級 (790日分)
1	한 눈이 失明되고 다른 눈의 視力이 0.1以下로 된 者
2	한 팔을 腕關節 以上에서 喪失한 者
3	한 다리를 足關節 以上에서 喪失한 者
4	한 팔의 機能이 全廢된 者
5	한 다리의 機能이 全廢된 者
6	두 발의 足趾를 모두 喪失한 者
	第 6 級 (670日分)
1	두 눈의 視力이 0.1以下로 된 者
2	咀嚼 또는 言語의 機能에 顯著한 障害가 남은 者
3	鼓膜의 大部分의 缺損이나 그 外의 原因으로 因하여 두 귀의 聽力이 耳殼에 接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소리를 解得하지 못하는 者
4	脊椎에 顯著한 畸形이나 顯著한 運動障害가 남은 者
5	한 팔의 3大關節中의 2個關節이 廢用된 者
6	한 다리의 3大關節中의 2個關節이 廢用된 者
7	한 손의 5個의 手指또는 拇指 示指를 包含하여 4個의 手指를 喪失한 者
	第 7 級 (560日分)
1	한 눈이 失明되고 다른 눈의 視力이 0.6以下로 된 者
2	鼓膜의 中等度의 缺損이나 그 外의 原因으로 因하여 두 귀의 聽力이 40센티미터 以上의 거리에서 普通말소리를 解得하지 못하는 者
3	精神에 障害가 남아 輕易한 勞務以外에는 從事하지 못하는 者
4	神經系統의 機能에 顯著한 障害가 남아 輕易한 勞務以外에는 從事하지 못하는 者
5	胸腹部臟器의 機能에 障害가 남아 輕易한 勞務以外에는 從事하지 못하는 者
6	한 손의 拇指와 示指를 喪失한 者 또는 拇指나 示指를 包含하여 3個以上의 手指를 喪失한 者
7	한 손의 5個의 手指 또는 拇指와 示指를 包含하여 4個의 手指가 廢用된 者
8	한 발을 “리스푸랑”關節以上에서 喪失한 者
9	한 팔에 假關節이 남아 顯著한 運動障害가 남은 者
10	한 다리에 假關節이 남아 顯著한 運動障害가 남은 者
11	두 발의 足指가 모두 廢用된 者
12	外貌에 顯著한 醜狀이 남은 女子
13	兩쪽의 壽丸을 喪失한 者
	第 8 級(450日分)
1	한 눈이 失明되거나 또는 한 눈의 視力이 0.02以下로 된 者
2	脊椎에 運動障害가 남은 者
3	한 손의 拇指를 包含하여 2個의 手指를 喪失한 者
4	한 손의 拇指와 示指가 廢用된 者 또는 한 손의 拇指 示指를 包含하여 3個以上의 手指가 廢用된 者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以上 短縮된 者
6	한 팔의 3大關節中의 1個關節이 廢用된 者
7	한 다리의 3大關節中의 1個關節이 廢用된 者
8	한 팔에 假關節이 남은 者

9	한 다리에 假關節이 남은 者
10	한 발의 5個의 足趾를 모두 喪失한 者
11	脾臟 또는 한 쪽의 腎臟을 喪失한 者
	第 9 級 (350日分)
1	두 눈의 視力이 0.6以下로 된 者
2	한 눈의 視力이 0.06以下로 된 者
3	두 눈에 半盲症, 視野狹窄 또는 視野變狀이 남은 者
4	두 눈의 眼瞼에 顯著한 缺損이 남은 者
5	코가 缺損되어 그 機能에 顯著한 障害가 남은 者
6	咀嚼과 言語의 機能에 障害가 남은 者
7	鼓膜의 全部가 缺損이나 그 外의 原因으로 因하여 한 귀의 聽力を 全혀 喪失한 者
8	한 손의 拇指를 喪失한 者 또는 示指를 包含하여 2個의 手指를 喪失한 者 또는 拇指와 示指 以外의 3個의 手指를 喪失한 者
9	한 손의 拇指를 包含하여 2個의 手指가 廢用된 者
10	한 발의 第1足趾를 包含하여 2個以上의 足趾를 喪失한 者
11	한 발의 足趾가 모두 廢用된 者
12	生殖器에 顯著한 障害가 남은 者
13	精神에 障害가 남아 從事할 수 있는 勞務가 相當한 程度로 制限된 者
14	神經系統의 機能에 障害가 남아 從事할 수 있는 勞務가 相當한 程度로 制限된 者
	第 10 級 (270日分)
1	한 눈의 視力이 0.1以下로 된 者
2	咀嚼 또는 言語言의 機能에 障害가 남은 者
3	14個 以上의 齒牙에 對하여 齒科補綴을 加한 者
4	鼓膜의 大部分의 缺損이나 그 外의 原因으로 因하여 한 귀의 聽力이 耳殼에 接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解得하지 못하는 者
5	한 손의 示指를 喪失한 者 또는 拇指와 示指 以外의 2個의 手指를 喪失한 者
6	한 손의 拇指가 廢用된 者 또는 示指를 包含하여 2個의 手指가 廢用된 者 또는 拇指와 示指 以外의 3個의 手指가 廢用된 者
7	한 다리가 3센티미터 以上 短縮된 者
8	한 발의 第1足趾 또는 그 外의 足趾를 喪失한 者
9	한 팔의 3大關節中의 1個關節의 機能에 顯著한 障害가 남은 者
10	한 다리의 3大關節中의 1個關節의 機能에 顯著한 障害가 남은 者
	第 11 級 (200日分)
1	두 눈의 眼球에 顯著한 調節機能障害가 또는 顯著한 運動障害가 남은 者
2	두 눈의 眼瞼에 顯著한 運動障害가 남은 者
3	한 눈의 眼瞼에 顯著한 缺損이 남은 者
4	鼓膜의 中等度의 缺损이나 그 外의 原因으로 因하여 한 귀의 聽力이 40센티미터 以上의 거리에서 普通 말소리를 解得하지 못하는 者
5	脊椎에 畸形이 남은 者
6	한 손의 中指 또는 藥指(環指)를 喪失한 者
7	한 손의 示指가 廢用된 者 또는 拇指와 示指 以外의 2個의 手指가 廢用된 者
8	한 발의 第1足趾를 包含하여 2個 以外의 足趾가 廢用된 者
9	胸腹部臟器에 障害가 남은 者

	第 12 級 (140日分)
1	한 눈의 眼球에 顯著한 調節機能障害 또는 顯著한 運動障害가 남은 者
2	한 눈의 眼瞼에 顯著한 運動障害가 남은 者
3	7個以上의 齒牙에 對하여 齒科補綴을 加한 者
4	한 귀의 耳殼의 大部分이 缺損된 者
5	鎖骨, 胸骨, 肋骨, 肩胛骨이나 또는 骨盤骨에 顯著한 崎形이 남은 者
6	한 팔의 3大關節中의 1個關節의 機能에 障害가 남은 者
7	한 다리의 3大關節中의 1個關節의 機能에 障害가 남은 者
8	長管骨에 崎形이 남은 者
9	한 손의 中指 또는 藥指(環指)가 廢用된 者
10	한 발의 第2足趾를 喪失한 者 또는 第2足趾를 包含하여 2個의 足趾를 喪失한 者 또는 第3足趾 以下의 3個의 足趾를 喪失한 者
11	한 발의 第1足趾 또는 그 外의 4個의 足趾가 廢用된 者
12	局部에 頑固한 神經症狀이 남은 者
13	外貌에 顯著한 醜狀이 남은 男子
14	外貌 醜狀이 남은 女子
	第 13 級 (90日分)
1	한 눈의 視力이 0.06以下로 된 者
2	한 눈에 半盲症, 視野狹窄 또는 視野變狀이 남은 者
3	두 눈의 眼瞼의 一部에 缺損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缺損이 남은 者
4	한 손의 小指를 喪失한 者
5	한 손의 拇指와 指骨의 一部를 喪失한 者
6	한 손의 示指의 指骨의 一部를 喪失한 者
7	한 손의 示指의 末關節을 屈伸할 수 없는 자
8	한다리가 1센티미터 以上 短縮된 者
9	한 발의 第3足趾 以上의 1個 또는 2個의 足指를 喪失한 者
10	한 발의 第2足趾가 廢用된 者 또는 第2足趾를 包含하여 2個의 足趾가 廢用된 者 또는 第3足趾 以下의 3個의 足指가 廢用된 者
	第 14 級 (50日分)
1	한 눈의 眼瞼의 一部에 缺損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缺損이 남은 者
2	3個 以上의 齒牙에 對하여 齒科補綴을 加한 者
3	팔의 露出面에 手掌大的 醜痕이 남은 者
4	다리의 露出面에 手掌大的 醜痕이 남은 者
5	한 손의 小指가 廢用된 者
6	한 손의 拇指와 示指以外의 手指의 指骨의 一部를 喪失한 者
7	한 손의 拇指와 示指以外의 手指의 末關節을 屈伸할 수 없는 者
8	한 발의 第3足趾 以下의 1個 또는 2個의 足趾가 廢用된 者
9	局部의 神經症狀이 남은 者
10	外貌의 醜狀이 남은 男子

5. 入院

入院이란 醫師에 依한 治療가 必要하여 自宅 등에서의 治療가 困難하기 때문에 病院 또는 診療所에 入室하여 늘 醫師의 管理下에서 治療에 專念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特히 問題를 舉論하는 것은 最近 入院者中에는 入院中 外出해서 自己職業에 從事 한다든지 飲酒 其他 Moral-Risk에 該當되는例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6. 不意의 事故와 身體內因的疾患

對象이 되는 不意의 사고<別表1>를 偶發의인 外來의 事故(다만 疾病 또는 體質의 要因이 있는者로서 輕微한 外因에 依하여 發病하거나 또는 그 症狀이 더욱 惡化되었을 때에는 그 輕微한 要因은 偶發의인 外來의 事故로 보지 아니함)이라고 身體內因的疾患을 認定하지 않는다. 그러나 大部分의 被保險者는 自己自身的 健康程度 即 여기서 말하는 身體內因的所持者(病弱者)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傷害를 當하면 紛爭의 要因이 된다. 이러한 경우 判定의 Key는 醫師의 診斷書와 官公署에서 發行하는 事故內容을 證明하는 書類의 記載內容이 된다.

7. 矯正視力

產災에서는 視力이라 함은 矯正視力を 指稱하는 것이므로 “眼鏡(콘택트렌즈에 依한 矯正視力은 除外)으로 矯正한 視力에 依據測定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生保에서는 다만 “矯正視力에

對하여 測定함”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眼鏡이나 Contact-Lens의 區別은 없다.

結論

高度障礙制度가 처음의 傷害에 依한 兩手, 兩足, 片手, 片足 및 兩眼失明등에 對한 保險納入免除에서부터 傷害以外의 疾病에 依한 廢疾까지도 擴大認定되었고 또 保障內容도 保險料納入免除에서 死亡保險料相當額을 廢疾給與金으로서 支給하게 되었다.

따라서 約款에 明示된 廢疾狀態判定에서 解釋의 잘못이 없도록 仔細히 說明하였다’ 保險金支給查定者の 參考가 되기를 바란다.

(註) 本稿는 1988년 6월 24일 韓國保險學會主催 “生命保險標準約款改善을 為한 심포지움”에서 發表한 内容임.

参考文獻

- 1) 韓國保險醫學會誌 第1券 1984年
- 2) 韓國保險醫學會誌 第2券 1985年
- 3) 韓國保險醫學會誌 第5~1券 1987年 3月
- 4) 韓國保險醫學會誌 第5~2券 1987年 8月
- 5) 日本保險醫學會誌 77券 1979
- 6) 日本保險醫學會誌 78券 1980
- 7) 日本保險醫學會誌 79券 1982
- 8) 日本保險醫學會誌 80券 1983
- 9) 日本保險醫學會誌 85券 1987
- 10) 生命保險標準約款(88. 2 改訂) 財務部
- 11) 障害等級認定 및 判定要領 楊元植論
- 12) 自動車保險損害查定實務 保險會社
- 13) 大韓醫學協會誌 第31券~5號 1988